



IFRS 적용실무 해설 (15)

이 자료는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의 각 주제별 담당자들이 해당 이슈별로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며, 향후 2~3년 간 IFRS 도입시점까지 이슈를 주제별로 소개할 계획이다. <편집자 註>

1.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결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2008년 개정))

상황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신규회사(이하 “New Co”) A를 설립하였다. 투자자들은 현금을 지불하고 New Co A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New Co A는 이 현금으로 제조 사업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다.

상황2. New Co B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甲과 회사 乙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New Co B는 甲과 乙의 지분 100%의 대가로 甲과 乙의 기존주주들의 보유지분에 대하여 자신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위의 상황 모두 사업결합을 위하여 신규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상기 두 상황에서의 이 신규회사가 사업결합의 취득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2008년 개정)에서는 사업결합을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업의 정의는 문단 B7~B13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사업결합에서 취득자

를 결정하는 경우 먼저 해당거래에서 취득되는 부분이 사업인지를 판단하여 사업결합의 정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해당하는 경우 누가 지배력을 획득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결합을 하면서 법률상, 세무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종종 New Co를 설립한다. 이 경우 New Co가 실질이 있어 회계상의 취득자로 식별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이 없이 단순히 사업결합만을 위해 설립된 기업으로 간주하여 회계상 취득자로 식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

기준서 제1103호 문단B18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결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새로운 기업이 반드시 취득자는 아니다. 만약 사업결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이 지분을 발행하여 설립된 경우,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문단 B13~B17의 지침을 적용하여 취득자로 식별한다. 이와 반대로, 대가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업이 취득자가 될 수 있다.”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거나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New Co는 일반적으로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의 문단에서와 같이 New Co가 현금이나 기타 자산을

지급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면서 사업결합을 하는 때에 이 New Co를 취득자로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상황 1에서 투자자들은 사업을 취득할 목적으로 현금을 지불하고 New Co A를 설립하였고, New Co A는 이 현금(자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였다. 따라서 New Co를 취득자로 하는 취득법 회계처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구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나 또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른 회사를 취득할 때 중간에 지주회사(이하 “Holding Co”)를 설립하고 이 Holding Co가 현금을 지급 또는 부채를 부담하면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중간 Holding Co는 사업결합의 취득자로서의 회계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중간 Holding Co를 통해 사업의 취득을 간접적으로 자금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문단 B18에서 규정한 대로 New Co B가 단순히 기존사업들의 결합을 위한 형식상의 존재로 설립되었다면 New Co B는 취득자가 될 수 없다. 위의 상황 2에서 회사 甲과 乙을 결합할 목적으로 New Co B가 설립되고 이 New Co B가 자신의 지분을 기존주주에게 발행하면서 사업결합을 추진하였다. 이는 문단 B18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New Co B는 회계상의 취득자가 될 수 없고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 하나를 취득자로 식별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결합참여기업 甲과 乙 중 누가 취득자인지는 기준서 제 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결정하며, 명확하게 식별이 어려운 경우는 기준서 제1103호의 문단B14~B18을 참조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문단 7). 결과적으로 New Co B의 재무제표에 甲과 乙 중 한 기업을 취득자로, 나머지 하나를 피취득자로 하는 취득법의 회계처리가 요구된다.

New Co가 설립되는 거래의 예로 물적분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물적분할로 한 개 또는 수개의 사업부가 분리되어 별도의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이 신설회사

를 취득자로 식별하여 인수되는 사업부의 자산, 부채 등을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취득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해석 49-55 “분할,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와 같은 물적분할에 대한 별도의 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관점에서 볼 때 물적분할은 New Co가 분할을 위해 설립되고 자신의 지분을 사업을 분할하는 기존법인에 발행하면서 사업을 취득하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이때, New Co는 지분을 발행하면서 사업을 인수하게 되므로 사업결합의 취득자가 될 수 없고 기존의 분할되는 사업부(또는 사업부그룹)가 취득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피취득자가 되는 New Co는 기준서 제1103호에 따른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준서 제1103호의 취득법의 회계처리가 요구되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의 구체적인 해당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거래를 기업구조개편(reorganisation)의 일환으로 보고 인수되는 자산이나 부채를 기존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장부가액법(Predecessor value accounting)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물적분할을 통해 인수하는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의 재무제표에 공정가치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회계기준 환경에서의 회계처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적용은 상기와 같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만일 New Co가 거래구조에 포함되어 있다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기업들은 사업결합의 구조를 결정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박상은 회계사



2. 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제1001호(이하 '기준서 1001호')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21호와는 달리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서 제100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양한 실무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 IFRS 도입 회사들이 재무제표 작성 시 직면할 수 있는 이슈들, 특히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에 대한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비용의 분석

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 더욱 목적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 비용을 분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포괄손익계산서(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기준서의 요구사항은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산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지배회사 A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만약 각각의 종속회사가 선택한 비용의 분석방법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상에서는 단일의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분석방법의 혼용도 인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1)번 요건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1) 분석방법의 혼용으로 인한 왜곡이 없어야 한다. 즉, 특정 항목에 대한 강조 등으로 왜곡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분석방법의 혼용은 인정되지 않

는다.

- 2) 성격별 분류의 주석공시가 요구된다.
- 3) 분석방법은 일관되게 적용되고 회계정책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 4) 분석방법의 혼용으로 인하여 매출원가(매출총이익)가 과소 계상되어서는 안 된다.

지분법 평가손익의 포괄손익계산서상 표시

기준서 1001호에서 최소 표시 항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당기손익에 대한 지분(이하 '지분법손익')의 포괄손익계산서상 표시에 대한 논의이다.

지분법손익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따라 '수익(revenue)'이 아닌 '차익(gain)'에 해당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 상 수익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분법손익은 투자회사의 '수익창출활동(revenue-generating activity)'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서 1001호 문단 8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사이에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투자 펀드나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벤처를 통하여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유틸리티 기업과 같이 드문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룹과 동일한 산업을 영위하는 관계기업투자 또는 조인트벤처에 대한 지분법손익은 일반적으로 수익창출활동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외환차이의 포괄손익계산서상 계정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실무지침 A94-A95에서는 외환차손익 및 외화환산손익을 영업외수익/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서 1001호에는 외환차이의 계정분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목적적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면 외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외화 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금융원가/금융수익으로, 기타 외화 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 영업손익' 등의 계정으로 영업손익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기업이 전체 외화 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격에 따라 금융원가/금융수익 및 영업손익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으로 표시한다 하더라도 금융원가/금융수익 또는 영업손익(표시하는 경우)이 왜곡표시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체안도 인정 될 수 있을 것이다.

파생상품 관련 손익의 포괄손익계산서상 계정 분류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고 효과적인 경우에는 파생상품과 관련한 손익과 위험회피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이 동일한 계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의 비효과적인 부분과 위험회피회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파생상품(단기매매목적) 관련 손익에 대한 계정분류는 기준서 1001호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단기매매 파생상품의 손익과 위험회피회계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손익' 등 영업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지침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단기매매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회사의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일관된 분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손익을 금융원가로 분류하는 등 주요 단기매매 파생상품 유형별로 분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회피회계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경우에도 회사의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위험회피회계의 효과적인 부분과 동일하게 위험회피대상의 손익과 동일한 계정분류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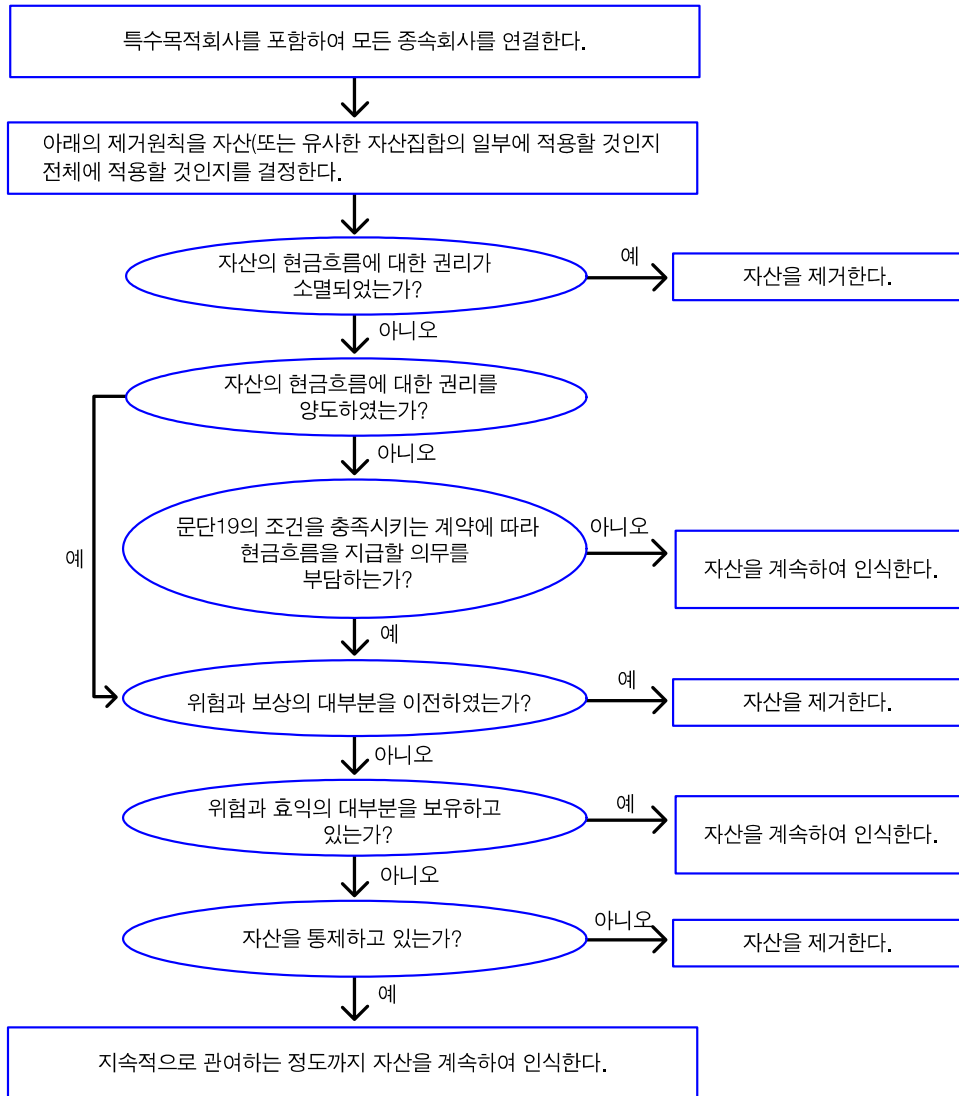
하지만 경제적헤지(Economic Hedge)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유형의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을 상이하게 계정분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계정분류 하는 것 - 예를 들면, 일반상품에 대한 파생상품 손익을 금융손익으로 분류 하는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유승경 회계사

3. 금융자산의 제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준서 제8호 및 해석 52-14에서 금융자산의 제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통제를 상실할 때 제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제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험과 보상 개념을 사용하는 등 '통제'와 '위험과 보상'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당해 제거조건 등을 적용하여 금융자산의 제거여부를 판단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의 제거를 위한 요건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적용지침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도를 제시하고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AG36)



제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들 중 양도자가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또는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양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1). 다음의 비교적 간단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의 보유(또는 이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위 순서도에 따라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 그 전 단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양수자가 연결범위에 포함된다든지 혹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위험과 보상의 추가 분석 없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1) A회사는 거래처로부터의 매출채권을 factoring을 통해 B은행에 양도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하여 매출채권 금액의 4%까지 보장해주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과거 10년간 위 거래처로부터의 매출채권에 대한 평균 손실율은 1%이다.

사례 2) A회사는 거래처로부터의 매출채권을 factoring을 통해 B은행에 양도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하여 매출채권 금액의 2%까지 보장해주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과거 10년간 위 거래처로부터의 매출채권에 대한 평균 손실율은 3%이다.

위 두가지 사례에서의 차이는 과거 매출채권에 대한 경험 손실율 및 손실액에 대한 보장비율이다. 사례 1의 경우 과거 경험손실율은 1%이며, 손실액의 4%까지 보장해주는 조건이므로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 사례 2의 경우는 과거 경험손실율은 3%이며, 손실액의 2%까지 보장해주는 조건이므로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혹은 이

전)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례 2에서는 다음 단계인 자산의 통제에 대한 고려에서 양수자에게 통제가 이전되었다면 제거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속적 관여에 따른 회계처리(*2)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지속적 관여 정도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의 제거에 대해 위 순서도상의 각 요건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제거여부 및 그 회계처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금융자산의 제거에 대한 내용을 보다 단순화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개초안이 발표된 상태이며(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009년 7월 31일까지), 2010년 상반기에 개정내용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김수완 회계사

시 사 경 제 용 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창투자 설립자본금이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아지면서 벤처캐피탈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데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가 5월에 일몰한 만큼 신규 벤처캐피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9. 6. 12, 머니투데이)

정부가 1997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시기에 생긴 많은 부실기업의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외국의 별처 펀드를 모델로 하여 금융회사, 보험회사를 제외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기구로써 우리나라는 1999년 2월 「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를 도입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데 반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자산운영, 보관 및 기타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주요 업무는 주식인수, 합병, 영업양수(讓受)를 통한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 경영 정상화, 재매각 등이다.